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3. 7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3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5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총무위원회(98. 3. 12) 상정

○ 제6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총무위원회(98. 4. 30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과장 박광천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 주민에게 문화정보 제공으로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부천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

나. 주요골자

○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, 문화관람실, 문화창작실, 문화사랑방, 개인연습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(안 제3조)

○ 문화의 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함(안 제5조, 제7조)

○ 문화의 집 시설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(안 제6조)

○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 조)

○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(안 제1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번 내 용
○ 문화의 집은 현재 개관중이죠?	○ 네, 그렇습니다.
○ 어디서 맡아서 운영하죠?	○ 문화원에서 임시로 맡아서 운영중입니다.
○ 문화원의 고유업무와 문화의 집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?	○ 네, 그렇습니다.
○ 위탁운영시 청소년 관련업무의 단체에 위탁 도 가능합니까?	○ 네, 가능합니다.
○ 위탁운영과 시직영의 장·단점을 말씀해 주 시죠?	○ 위탁운영시는 지속적이며 원활한 운영이 가 능하며 시민문화육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역정서와 시민 취향 에 맞는 문화 복합공간 운영이 가능하며 시 직영시는 지휘 및 통제가 원활해지며 예산 의 확보, 집행, 감사기능이 강화된다고 봅니 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공무원이 직영관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위탁운영자를 선택해서 시민문화육구에 맞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자.

나. 반대토론

- 위탁운영과 공무원이 직영 관리하는 측면 모두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감시감독 강화를 위 해 직영으로 하자.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조례안을 유보시켜 시직영으로 하거나 차기 의회로 넘기자는 소수의견 있었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

의안번호	제358호
의결년월일	98. 5. 2 (제60회)

제안년월일 : 1998. 5. 1
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☐ 수정이유

- 문화의 집 위탁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또는 문화의 집 근무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, 사회복지,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로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☐ 주요골자

- 안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

“③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

“④수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, 사회복지,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.”를 삽입하여 수정함.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중 “위탁운영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문화정보의 제공으로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수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, 사회복지,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.

제7조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	----- <u>운영</u> -----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문화정보의 제공으로</u> 지역주민의 문화체험,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부천문화의 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<u>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-----
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 ~ ②(생략)	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 ~ ②(제정안과 같음)
(신설)	③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	④수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, 사회복지,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.
제7조(위탁계약 및 기간)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<u>3년</u> 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.	제7조(위탁계약 및 기간) -----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358호
의결년월일	98. 5. 2 (제60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3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에게 문화정보제공으로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부천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

□ 주요골자

-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, 문화관람실, 문화창작실, 문화사랑방, 개인연습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문화의 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(안 제5조, 제7조)
- 문화의 집 시설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조)
-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(안 제10조)

[수정안포함]

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험,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부천문화의 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문화의 집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-5번지에 둔다.

제3조(시설)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문화시청각실(A/V 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, 휴게라운지)
2. 문화관람실
3. 문화창작실
4. 문화사랑방
5. 개인연습실
6.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4조(업무)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 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

③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수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, 사회복지, 사회 교육을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.

제6조(이용료) 문화의 집 시설의 이용료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계약 및 기간)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 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시설의 운영) ①문화의 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 집 기본 운영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. 다만 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비지원)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)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이급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3.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